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2. 23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2. 2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류인섭)

가. 제안이유

-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상은 확대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 : 국가유공자 개인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안 제2조)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안 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확대 :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 50% 경감 → 면제(안 제10조)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감면확대 : 5세대 → 2세대(안 제12조)
-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업은 개인의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안 제15조,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 시행규칙에 예외규정, 유예기간 등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는 1,170명입니다. ○ 네 ○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5조, 제16조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자주재정권을 침해함
부천시의 경우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업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시행치 못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체계상 상위법 개정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는 하나 가능하면 예외조항 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강구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출자 : 부천시장

1. 제안이유

-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상은 확대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 개정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 : 국가유공자 개인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안 제2조)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안 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감면 확대 :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 50% 경감 → 면제(안 제10조)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 감면확대 : 5세대 → 2세대(안 제12조)
-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업은 개인의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안 제15조, 제16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 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험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본문 중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

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5세대”를 “2세대”로 하며,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 삭제한다.

제24조의4(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제24조의4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제2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제1항 본문 중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애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산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
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
.....

.....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
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
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간면신청하는.....

.....
.....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침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생략)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략)

4. 전통건조물보전부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

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
.....
.....
.....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

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생략)

제13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②(생략)

③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제1호 내지 제3호(현행과 같음)

(삼제)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

(삭제)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하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
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
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
표준액 또는 범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4조의4(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부천
시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
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
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

제24조의4(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
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 간 전
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50%를 경감한
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
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간
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총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부천시
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6조(감면신청 등)

.....

.....

..... 시장에게 과세기준일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